

◆ D-36 회사가 부도시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가?

1.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불임금 청구

산재보험적용사업장은 재판상도산(화의개시결정, 정리절차개시결정) 또는 사실상도산(건설업은 상시근로자 200인이하 해당)인정을 하도급업체관할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받은후, -->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(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으로 45세이상은 120만원, 30-45세: 100만원, 30세미만 80만원한도)을 지급받을수 있음.

체당금의 청구절차는 “확인신청서”, “체당금지급청구서”, “퇴직증명서” 제출 : 개별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신청하여야), 접수 → 확인신청서처리대장에 등재 →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·확인 →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 →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송부(신청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) →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함.

2.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

- ① '87. 11. 28일 이전에 설정된 질권,저당권
- ② 최종 3개월분 임금과 '89. 3. 29일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중 8.5년분 한도, 97. 11.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년분의 퇴직금
-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
- ④ 질권·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
- ⑤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
- ⑥ 조세·공과금
- ⑦ 일반채권으로써

이중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법인재산만을 의미하고 개인의 경우 사업주개인의 총재산을 의미함.

또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액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,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위하여는 경매가 개시되어 경락되기전

에 가압류 및 압류 등의 방법으로 임금채권이 있음을 알려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.

3. 체불노임 청구절차

- ① 공사대금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
- ②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 --> 조사 --> 체불임금내역확인원, 무공탁가압류협조전을 노동사무소에서 발급 --> 이를 첨부하여 재산 또는 공사대금미수금에 가압류 --> 본안소송 --> 확정판결 --> 배당
- ③ 체불임금내역에 사업주, 근로자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임금지급공증 --> 집행문(확정판결과 동일) --> 압류 --> 배당의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여야 함.

4.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

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『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』, 이 규정의 취지는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위 임금에 대하여는 법원의 압류 및 공과금 징수관서의 압류도 금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해석되므로, 위 법원의 압류는 동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은 가능함.